

의안번호	제 351 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박형용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20년 1월 6일

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박형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5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1월 6일  
발 의 자 : 박형용, 박상돈, 최경천,  
심기보, 육미선, 이상욱

1. 제안이유

-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내 대학생뿐만 아니라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 등 구직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한 졸업생(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)에게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대학생의 정의를 개정함(안 제2조)
  -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학생 중

현 행	개 정
·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	·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·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9- 99호
- 다. 협의 :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
- 라. 비용추계 : 붙임

##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재학(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)중인 학생으로” 를 “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과 졸업생(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)으로서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  략)</p> <p>3. “충청북도 지역 대학생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<u>재학(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)중인 학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 <u>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과 졸업생(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)으로서</u> ----- ----- -----.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“대학생“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(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 있는 학생(대학원생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6. “고등교육기관“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.
  -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 - 나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
  - 다.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
  - 라. 외국의 대학(대학원을 포함한다)
7. “금융회사등“이란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
### 제3조(학자금 지원 대상)

-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. 다만,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,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.

##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-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충청북도 대학생 및 졸업생 (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)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조례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의 대출이자 지원

### 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4조(학자금대출 지원) :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와 시·군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8분위 이하 가구소득분위 내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대상 기준 확대·시행할 계획임.
- 산출내역 (단위 : 천원)

구분	실지원대상 (A=무이자제외)	연간 발생이자 (B=A×2.2%)	연간 소요예산			도비 (E×40%)	시군비 (E×60%)
			재학생* (C=B×23%)	졸업생** (D=C×10%)	계 (E=C+D)		
예산	21,129,101	750,987	170,200	17,000	187,200	74,880	112,320
인원	7,358명	-	1,692명	169명	1,862명	-	-

\* 재학생 : '19년 실지원액 및 실지원대상 × 약 23% 적용 → **약 1억7천, 1,692명**

\*\* 졸업생 : 지원 재학생 기준 10% 정도 예산추계 반영 → **약 1천7백, 169명**

#### 나. 추계 결과

-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소요비용은 도와 시군에서 공동부담 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2020년도 188백만원, 2021년 188백만원, 2022년 188백만원, 2023년 188백만원, 2024년 18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.

(단위 : 백만원)

예산액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936	187.2	187.2	187.2	187.2	187.2

-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(40%), 시군비(60%)

#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
세 입		187,200	187,200	187,200	187,200	187,200	936,000
도 비		74,880	74,880	74,880	74,880	74,880	374,400
시군비		112,320	112,320	112,320	112,320	112,320	561,600
세 출		187,200	187,200	187,200	187,200	187,200	936,000
학자금대출 이자지원		187,200	187,200	187,200	187,200	187,200	936,000
재원 조달		187,200	187,200	187,200	187,200	187,200	936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74,880	74,880	74,880	74,880	74,880	374,400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시·군비		112,320	112,320	112,320	112,320	112,320	561,600
기 타 (민간 자부담)							